

# 개화기 서구 국제법의 수용과 근대국제질서의 인식

김 연 철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본 논문은 서구중심적 가치관과 근대 국제법 지식체계를 반영한 『만국공법』이 조선에 어떠한 경로로 전래되었으며, 19세기 개화파 등 지식인들이 새로운 근대국제질서의 본질과 『만국공법』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중국 중심의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가 서구근대국제질서에 편입되는 19세기 개화기에 『만국공법』의 수용과정은 당시 지식인들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틀과 규범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근대 외교제도의 운영양상과 조약체결에 관련된 근대국제법 지식체계를 수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전개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개화기 『만국공법』의 전래과정에서 당시 지식인들의 근대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음 세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첫째, 만국공법이 국가간 전쟁을 예방하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전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한 경우이다. 둘째, 만국공법은 명분상에 그치며 실재는 약육강식의 권력정치가 전개된다고 파악하여, 만국공법과 조약체결 등 근대국제질서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셋째, 만국공법과 근대국제질서에 대해 불신하면서도,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만국공법을 활용하여 부강한 조선 건설을 시도한 경우이다. 특히 개화파와 일부 유학자들이 만국공법을 원용하거나 이에 호소하는 경우를 보면, 만국공법은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대청관계에서, 그 이후에는 주로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05-B00005).

## I. 머리말

사회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접근과 전문인 육성을 위한 하나의 분야로서 정치학이 한국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일반적으로 1945년 해방 이후 국내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근대 국제질서의 변화상을 인식하고 새로운 근대국제질서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기에 당시 한국의 지식인 및 정치가들이 국제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새로운 변화상을 인식하는 틀과 그 속에서 한국의 자주독립과 부강을 이룩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해 고민한 측면을 한국에서 근대 국제정치에 관한 일련의 담론과 정책적 토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질서로서 기존의 중국중심적 전통질서가 붕괴되고 서구근대국제질서에 편입되는 19세기 개화기에 서구의 근대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관한 서적을 구입, 번역 및 소개하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근대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의 기원 내지 태동과정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많은 지식인들 및 정치가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만국공법』이라는 책자의 전래와 이를 둘러싼 인식과 활용구상에 관한 일련의 논의들을 통해서 당시 한국인의 국제질서관의 변천과 외교정책적 구상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를 자세히 엿볼 수 있다.

이 시기 『만국공법』 등 국제법의 전래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인식의 틀 및 규범을 인식하는 한편, 근대 외교제도의 운영양상과 조약체결에 관련된 근대국제법의 지식체계를 수용하려는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구중심적 가치관과 지식체계를 반영한 『만국공법』이 조선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전래되었으며, 19세기 조선의 개화파 등 지식인들이 새로운 근대국제질서의 본질과 『만국공법』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이를 통해

1) 이와 관련, 당시 『만국공법』 등 관련 서적이 조선에 전래되는 과정과 그 반응에 대한 기존 연구로서 이광린(1982); 김용구(1993; 1997; 1999); 김봉진(1995); 유재곤(1995); 최종고(2001); 김세민(2000; 2002); 김홍수(2002); 오영섭(2004)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근대 (국제)정치학의 태동과정에서 만국공법의 역할과 제약점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국제)정치학의 연구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II. 19세기 『만국공법』의 전래와 서구 근대국제법 지식체계의 수용

### 1. 19세기 서구 국제법의 특징과 서구 ‘문명’ 관의 확산

일반적으로 국제법학의 시조로 알려진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는 『포획법론』(1604-5), 『자유해론』(1609), 『전쟁과 평화의 법』(1625) 등 주요 국제법 서적을 저술하였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로마법 체계에서 만민법(萬民法)이라고 번역되는 유스 겐티움(jus gentium)을 자연법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유스겐티움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내용은 국가간의 법이라는 근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인간의 자유의사에서 연역적으로 추론되는 것은 자연법인 반면, 귀납적으로 추론되는 것은 유스겐티움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유스겐티움은 ‘law of nations’로 영역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이러한 번역이 부정확하다고 하여 ‘international law’라고 명명하였다. 즉 국내법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주권국가간의 법으로서 ‘국제법’을 지칭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law’라는 용어가 창안되었다(김용구 1997, 20-44).

이러한 서구 국제법이 문명국가간의 법이라는 사고가 확산된 배경에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구 ‘文明(Civilization)’ 개념이 형성되고 비서구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근대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지는 ‘문명(文明)’ 개념은 ‘문화(文化)’ 개념과 함께 18세기 중엽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文明’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야만(野蠻)’이라는 반대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자신 및 타자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文明 개념은 자신이 타자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프랑스인 등 유럽인들은 인간사회를 ‘원시(savagery)’, ‘야만(barbarism)’ 및 ‘문명(civilization)’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들에게 각각의 민족적 차이는 무시되었으며, 문명으로의 발전이 절대적인 역사의 법칙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문명 개념을 통하여 유럽인들은 자신들을 비유럽지역에 대하여 문명인으로, 그리고 문

명을 타국에 전파하고 팽창시키는 운반자로 자처하면서, 자신들의 생활 방식, 행동방식 및 제도 등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은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민족적 팽창과 식민지 개척을 ‘문명화’라는 미명아래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Elias 1978, 3-4, 33-37, 91-95). 이러한 서구의 문명관은 이후 살펴볼 서구 국제법상에서 유럽식의 문명기준을 결정짓는 하나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즉 유럽중심적 시각에서 보면, ‘문명’ 기준은 처음에는 비유럽국가에서 유럽인들의 생명,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장되어 졌으나, 나중에는 비유럽국가들이 유럽의 문명화된 나라들로 구성된 국제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필요조건들로서 규정되었다(Gong 1984, 239). 당시 19세기 서구 국제법 학자들이 제시한 문명의 기준들 중 국제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진다. 즉 문명 국가는 전쟁법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요구되었다. 또한 문명국가는 자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이민족인 및 토착인 등도 포함하여 이들에게 법적 정의를 보장하는 국내 재판소 및 공포된 법 체계 등을 유지해야만 했다. 그리고 문명 국가는 외교적인 상호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적합하고 상설적인 기구들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체제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Gong 1984, 14-15).

일반적으로 19세기 서구의 국제법의 특성을 요약하면, 지리적 측면에서는 ‘유럽의 법’이었으며, 종교적, 윤리적 영감에 기초한 ‘기독교법’이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동기를 중시한 ‘중상주의적 법’이었으며, 정치적 목적을 지닌 ‘제국주의적 법’의 성격을 강하게 띤 일련의 규칙들이었다(김용구 1997, 45-68).

특히 위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당시 서구의 국제법적 지식 및 외교실무를 소개하는 국제법 서적들이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만국공법』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서적으로 번역되고 전래되는 과정은 바로 이들 비서구 국가에서 19세기의 서구적 문명기준과 국제정치적 기준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

한편,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19세기 후반 서구 근대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기 이전에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천하질서가 형성·유지되어 왔다. 유럽의 근대 국제정치질서는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근대국가’를 그 구성단위로 하면서, 근대국가를 넘어선 상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근대국가들간의 병렬적 구조에 입각하여 구성되었다. 이에 반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형

성한 유교권 국제정치질서는 천자(天子), 제후(諸侯) 및 배신(陪臣) 등으로 이어지는 서열적이며 수직적인 질서였다. 유교권의 국제정치질서내에서 정치양식은 유교의 정교관념에서 유래되었다. 국내정치체제의 법질서 및 지배질서는 당·명 율계(唐·明律系) 또는 충효사상에 입각한 가부장적인 전제정치이었다. 그리고 국제정치 질서는 예교(禮敎)를 근본으로 하면서, 그 권역을 ‘천하’라고 하여 천명을 받드는 중국 왕조의 천자의 덕이 미치는 범위로서 관념되었다(김용구 1997, 70).

19세기 후반 조선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까지 조선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하에서 ‘사대자소(事大字小)’의 예(禮)라는 명분하에 종주국인 중국에 대하여 조공국의 의례적인 절차로서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쳐왔다. 명의 성립 이후 확립된 사대질서 또는 조공질서는 청에 이르러 완비되었다. 청조는 5번에 걸쳐 『회전(會典)』을 중수하였으며, 각 회전에는 조공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세기말 완성된 『광서회전(光緒會典)』에는 사실상 중국의 사대질서가 와해되었는데도, 법률상의 제도로서 그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그러나 중국 중심의 전통적 국제 질서는 1840년 아편전쟁의 패배이후 1842년 8월 난징(南京) 조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비롯된 일련의 개국조약들에 의하여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청이 서양 국가들과 체결한 일련의 수호조약에서는 전통적 조공 질서의 파괴가 명문으로 규정되었으며, 공행상인 제도가 부정되고, 여러 무역항들이 개항되었다. 그리고 국가문서로부터 화이의 구별을 추방하기 시작하여 1858년 6월 중·영간 텐진(天津)조약에서 이후 모든 공문서에 ‘이(夷)’자의 사용을 금지시킬 것이 명기되었다. 당시 조약문안에는 청국 황제와 외국 군주가 법적으로 동등하다는 국가평등 관념이 삽입되었으며, 1860년 10월 체결된 베이징 조약에서는 상주외교사절 제도가 명문화되었다.

그동안 청조의 예부(禮部)에서 조공질서를 관할하여 왔으나, 서양 국가들과의 개국조약의 체결 이후 서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예부를 대신하여 새로운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제도가 창설되었다. 그 결과 1861년 1월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2) 사대주의와 조공관계, 그리고 조공질서의 성립과 전개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용희·신일철(1977); 권선홍(2004); 김용구(1997, 69-111)를 참조하기 바람.

계기로 제도로서의 조공질서도 붕괴되기 시작하였다(김용구 1997, 97-99).

이러한 시기에 서구의 근대국제질서의 운영양상과 외교제도를 이해할 목적으로 19세기 중반에 한역된 대표적인 국제법 서적들의 하나로서 『만국공법』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오랫동안 중국에 선교사로 와있던 윌리엄 마틴(W.A.P. Martin)은 당시 저명한 국제법 학자인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저작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를 번역하여 『만국공법(萬國公法)』으로 출간하였다. 이후 청국 정부는 1864년 『萬國公法』 초판 300부를 각 지방관아에 배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최초의 국제법 번역서인 『만국공법』의 발간에 대하여 당시 중국의 관료층은 대체로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런 중국 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예로서, 당시 영국 주재공사로 부임한 귀쑹다오(郭嵩燾)가 총서(總署)에 보낸 보고문에서 만국공법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이유로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김용구 1997, 134). 위 책에서는 서구의 주요 용어들, 예를 들면 Law를 ‘法律’로, Treaty를 ‘盟約’으로, ambassador를 ‘第一等欽差’로, neutrality를 ‘局外’로, selfdefense를 ‘自護’ 등으로 번역되었다. 『만국공법』의 출간은 이후 ‘國家’, ‘主權’ 등의 번역어를 통해 한자문화권 지식인들이 서구의 국제질서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sup>3)</sup>

『만국공법』의 내용을 보면, 제1권 제2장 ‘論邦國自治自主之權’(원문은 Nations and Sovereign States)에서는 주권국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2권 제1장 ‘論其自護自主之權’에서는 자호자주권(Rights of Self-Preservation and Independence)을, 제2장 ‘論制定法律之權’(Rights of Civil and Criminal Legislations)에서는 국제사법으로서, 외국인의 지위와 보호·국적·외교특권·외국군대와 군함의 지위·치외법권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 ‘論諸國平行之權’에서는 平行權(Rights of Equality: 평등권)을, 제4장 ‘論各國掌物之權’(Rights of Property)에서 大海(High Sea: 公海)를 다루고 있다. 제3권 제1장 ‘論通史’는 외교특권으로서, 불가침권, 치외법권, 수행원과 가족의 특권 및 영사의 특권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 ‘論商議

3) “해제 개화기의 법학서.”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81. 『萬國公法』, 3-6. 이 시기 『만국공법』을 비롯하여 『성초지장』, 『공법편람』, 『공법회통』 등 주요 번역서적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김현철 2004, 5-9를 참조하기 바람.

立約之權'은 조약의 수정과 비준 및 조약의 영속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제4권은 제1장 '論戰始'에서는 전쟁개시의 의의·절차·효력을, 제2장 '論敵國交戰之權'에서는 교전시 국제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3장 '論戰時局外之權'은 전시의 국외중립에 대해, 제4장 '論和約章程'은 강화조약의 정의, 절차, 효과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김홍수 2002, 169-180).

그리고 위의 『만국공법』의 내용을 일부 요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만국총설(萬國總說)』이 1884년 발간됨으로써, 당시 만국공법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위 책 『만국총설』은 일본인 岡本監輔와 청국인 朱克敬이 저술한 3권 3책의 분량으로서, 전 세계의 지리와 인종 및 주요 국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하권에서는 『만국공법』에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사이의 전쟁과 강화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다시 요약·설명하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이 청국에서 번역된 『萬國公法』 등 일련의 서적들이 이후 일본과 조선에 전래되어, 국제법의 대명사, 또는 서구 국제질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위 책을 읽으면서 전통적인 중화질서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서구 근대 국제질서의 운영양상과 서구 국제법지식 체계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 2. 『萬國公法』 번역서적의 전래와 한국내 파급효과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및 1875년 운양호사건 등을 겪으면서 조선에 서는 대내외적 위기 의식이 고조되었다. 이후 일본,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선이 만국의 일국으로서 국가를 유지 및 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국강병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을 통해 유입된 『만국공법』 등 번역서적이 조선의 판료지식인 및 재야지식인층에 보급되면서 근대 국제질서의 양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상

4) 위 책의 저자를 소개하면, 일본인 岡本監輔(1839-1904)는 阿波 美馬郡 三谷村 출신으로 1863년 사할린 탐험에 올라 1868년 函館裁判事に 임명되었고 1873년 陸軍省參謀局編纂課의 위탁으로 淸과의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 淸에 건너갔다. 朱克敬(?-1890)은 臯蘭(현재 甘肅省 蘭州府 일대) 출신으로 湖南省 龍山縣의 典史가 되었으며, 당시 국제정세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變法思想의 고취에 힘썼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자료 서지정보, 萬國總說,” [http://e-kyujanggak.snu.ac.kr/HEJ/HEJ\\_NODEVIEW.jsp](http://e-kyujanggak.snu.ac.kr/HEJ/HEJ_NODEVIEW.jsp)(검색일 2005. 2. 14).

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에서 근대국제법체계로서 만국공법의 존재 여부를 인지한 사례로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일본과의 수호조약체결을 위한 양국간 회담이 벌어졌던 시기인 1876년 1월 18일(양 2월 12일) 조선측 대표 신헌과 일본측 대표 구로다 기요다카(黒田清隆)간의 회담에서 ‘만국공법’이 언급되었다(김용구 1997, 182-185). 이날 구로다 기요다카(黒田清隆)는 ‘萬國公法’을 언급하면서 한일양국간 조약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종시대사』 고종 13年 1月 18日).

그리고 번역서적 『만국공법』이 조선에 공식 전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사문답(日使問答)』과 『왜사일기(倭使日記)』의 1877년 12월 17일조에 의하면 1877년 12월 17일 하나부사(花房義質)가 당시 예조판서(禮曹判書) 조영하(趙寧夏)에게 『만국공법』과 『성초지장(星指掌)』 두 책을 기증하고 특히 『성초지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당시 하나부사가 조선측에 서구 근대외교체도의 핵심인 상주외교사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위 책들이 전래된 것으로 보여진다(김용구 1999, 3-4).

그 이전 시기에도 『萬國公法』 책자는 중국에서 간행되자 곧 조선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만국공법』이 간행되었던 1864년부터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던 1876년 2월까지 조선에서 청에 파견했던 사절들의 횡수만 보더라도 23회를 넘는다. 그 사이 이들 사신들이 『만국공법』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으로써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광린 1982, 123-124). 그리고 김홍수(2002)에서는 1873년 동지사로서 청국을 방문한 정건조(鄭健朝)와 청국 張世準과의 필담을 강위가 정리한, 『강위전집(姜瑋全集)』에 실린 “북유담초(北游談草)”의 기록을 토대로 1874년 이전에 『만국공법』이 조선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교문서에 의하면, 당시 일본 주재 영국 공사 파크스(H. Parkes)는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교섭하고 일본으로 귀국한 모리야마(森山茂)와 회견하여 조선사정을 자세히 들은 후 이를 1876년 3월 27일 영국 본국정부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조선측 대표들도 휘튼이 저술한 국제법서적의 중국 번역본, 즉 『萬國公法』 번역 서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5)</sup>

5) Parkes to Derby, Mar. 27, 1876. Park Il-Keun(朴日根),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近代韓國關係英·美外交資料集), Seoul: Shinmundang, 1989, p.47. 김용구 1999, 5; 김홍수 2002, 166에서 재인용함.



일본과의 수호조약체결 이후 청·일이 서구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을 견문하기 위해 조선 정부차원에서 파견한 사절단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는 바로 『만국공법』 등 근대국제질서의 운영원리와 외교실무를 이해할 수 있는 서적들을 구매하며, 이에 관련된 청·일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1880년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金弘集)에 의해 『이언(易言)』이 조선에 전래된 이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부국강병정책을 추진하고 『이언』을 전국에 반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관응(鄭觀應, 1841-1923)이 1871년 간행한 『이언』에서는 서양 각국이 중국에 읽기를 권고하는 책으로서 『만국공법』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는 중국이 지금까지 지구의 중심에 있으며 서양을 오랑캐로 바라보았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만국의 일원이 됨을 인정한다면, 만국공법을 중국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易言』上卷, 「論公法」, 1880년, 3쪽). 따라서 『이언』을 통해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만국공법'을 인지하거나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당시 조선의 개화파들의 국제질서관은 정관응의 『이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정관응은 1880년 출간된 『이언』上卷의 「論公法」에서 당시 국제질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정세는 러시아가 영국, 미국, 프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및 일본 등 각국과 해상에서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마치 전국시대의 7개 국가가 경쟁하는 양상에 비유해볼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정책은 진(秦)의 연횡(連橫)에, 나머지 국가들이 러시아의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조약을 맺어 동맹을 결성하는 것은 나머지 6국의 합종(合縱)에 비유될 수 있다.”(『易言』上卷, 「論公法」, 3쪽).

그리고 김홍집이 귀국시 같이 가져온 『조선책략(朝鮮策略)』에서는 조선이 서구 국제법 질서에 편입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위 책에서는 서구 근대국제질서를 뒷받침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는 '만국공법'이며, 정치현실로는 '세력균형(균세)'라고 설명하였다(김수암 2002, 7).

그리하여 당시 개화파 등 조선의 지식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책들을 읽으면서 만국공법으로 일컬어지는 서구의 근대 국제법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

다. 그 이후 개화파들은 당시 서구 국제법 및 근대 국제정치질서를 작동시키는 정치적 원리와 그 작동과정에 관심을 갖고 좀더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1881년 1월 11일 신사유람단(일명 조사사찰단)의 일원으로 파견된 어윤중(魚允中)은 대장성 및 해관을 비롯한 일본의 재정부분을 중점적으로 시찰하였다. 그리고 귀국 후 그가 작성한 「수문록(隨聞錄)」에서는 일본의 사법성(司法省)이 서구법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중정년표』 권2, 고종 18년 정월 11일조). 또한 1881년 조사사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한 강진형(姜晋馨)의 『일동록(日東錄)』에서도 만국공법이 언급되고 있다. 그중 「문견잡록(聞見雜錄)」에서는 당시 일본의 개항·외국과의 관계·관계·만국공법·통상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한편, 1881년 영선사의 인솔자로서 청에 파견되었던 김윤식(金允植)은 귀국하면서 『공법편람(公法便覽)』과 마틴의 저서인 『부국책(富國策)』을 비롯하여 근대식 무기공장 설립에 필요한 근대과학서적 등 많은 책자들을 구입하여 가져왔다(최진식 1990, 43-59).

그러나 조선에서 국제법 서적을 매개로 서구의 근대 문물과 제도를 소개 및 인식하는 과정에서 당시 위정척사파 등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였다. 『조선책략(朝鮮策략)』에서 조선의 향후 외교정책으로서 ‘연미(聯美)와 ‘결일(結日)’ 등을 제시한 것이 당시 유학자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초래했다. 특히 이만손, 홍시중 등은 조선의 향후 외교정책으로 러시아를 적국으로 삼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및 미국과 연합하자는 구상에 적극 반대하였다. 이만손(李晩孫)이 중심이 되어 1881년 음력 2월 26일자로 올린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에서는 위 『조선책략』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전통적인 신의에 입각하여 기존의 조·중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홍시중(洪時中)(1881년 음력 3월 23일), 신섬(申巖)(1881년 음력 윤7월 6일), 홍재학(洪在鶴)(1881년 음력 윤7월 6일자) 등이 상소를 올려서, 러시아의 남하위협론을 비판하면서 당시 외국과의 조약 체결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외국과의 문호개방 및 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의 갈등과 진통을 겪은 후, 임오군란의 사후수습을 위해 1882년 8월 5일 전국에게 내려진 고종의 교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만국공법을 수용하여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려는 당시 조선 집권층의 인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오면서 천하의 대세는 옛날과 판이하게 되었다.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 즉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정밀한 기계를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배나 수레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병력으로 서로 대치하고 ‘만국공법’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양상이 마치 춘추열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중략) 각국이 조약을 맺고 통상하는 것은 세계의 공법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고종실록』, 고종 19년 8월 5일조).

김윤식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위 교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만국공법』, 『조선책략』, 『이언』 등 번역서적의 전래는 조선의 지식층에게 서양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하는 한편,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상과 문명개화라는 새로운 추세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데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이광린 1969).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당시 1881년 음력 윤7월 6일 홍재학의 상소, 1882년 8월 24일 지식영의 상소 및 같은 해 10월 7일 변옥의 상소문에서 이들 서적들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 1880년대 초에 이미 번역서적 『만국공법』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널리 유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변옥(下鎔)은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해 조선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참여하여 각국과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책략』, 『이언』, 『만국공법』 등의 책자를 간행하여 전국에 보급시킬 것을 주장하였다(『고종실록』 고종 19년 10월 7일조).

이러한 서적들의 전래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초 시점에서 조선의 지식인이나 관료들이 국제법 지식과 조약체계에 대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 지식영은 다음과 같이 조선이 대외관계 및 조약체결과 관련된 실무 사항을 모르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 대응책으로 『만국공법』 등 관련 서적의 내용을 숙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 나라는 바다의 동쪽 구석에 위치하여 있으며 예로부터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건문이 넓지 못하고 시국에 어둡습니다. 나아가서 이웃 나라와 관계를 가지거나 조약을 맺는 것이 모두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국공법』, 『조선책략』 등의 책들이 막힌 소견을 터워주고 현 정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들입니다.”(『고종실록』 고종 19년 8월 23일조).

위에서 살펴본 서적들의 전래를 계기로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19세기 새로운 근대국제질서의 전개양상을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나라간 경쟁 및 대결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이행하였다. 당시 서구가 중심이 된 국제사회에 편입하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과거 중국중심의 천하질서와는 다른 질서하에 놓여 있음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새로운 국제질서에서는 서구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호 경쟁 및 대결하는 양상이 확산되어 감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도 이러한 서구 각국간의 각축현상에 조선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 III. 서구 근대국제질서의 인식과 만국공법관의 제유형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국공법』의 전래와 이로 대변되는 근대국제질서에 대한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의 반응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만국공법』 서적에 소개된 국제법 지식체계를 적극 도입하며, 만국공법이 국가간 전쟁을 예방하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전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한 경우이다. 둘째, 이와 반대로 만국공법이 명분상에 그치며, 실제로는 약육강식의 권력정치가 전개되는 양상에 실망하여, 만국공법과 이에 기반한 근대국제질서를 배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셋째, 만국공법과 근대국제질서에 대해 불신하면서도 만국공법을 준수하고 활용함으로써 근대국제질서에 편입된 조선을 부강한 근대국가로 건설하려고 시도한 경우이다. 이하에서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의 반응을 위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근대국제질서에의 편입과 만국공법 도입 · 수용론

개화기에 서구의 국제법(만국공법)이 전래되면서, 세계 각국이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써 국가간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파되었다. 『한성순보』 1883년 12월 20일자(6호)에 서구의 전쟁법 관념이 다음과 같이 소개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네덜란드인 휴고 그로티우스(虎哥)가 처음으로 공법을 주창하

자 그걸 강술하는 자가 다투어 일어나 지금에는 세계 각국이 그걸 신봉하니, 약소 국가가 강국에게 병탄되지 않음은 모두 그의 덕택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공법의 내용은 국제간의 교제, 교전 등 지켜야 할 의법(義法)과 관행하는 조례일 뿐, 교전이 천리(天理)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漢城旬報·漢城週報』, 번역문, 91).

위의 인용구문에서 네덜란드인 호가(虎哥)는 그 내용상 그로티우스(H. Grotius)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 말미에 청의 왕도(王)가 『순환일보(循環日報)』에 신기를 “이상은 일본 역사가 목하진홍(木下眞弘)의 의론(議論)으로서, 그 견해가 참으로 절정에 이르렀고 입의(立義)한 것 역시 비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위 기사에서는 “5대주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어 공법을 유지하여 영토를 다투지 않아 전쟁이 그친다면 인류의 고생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漢城旬報·漢城週報』, 번역문, 91).

이로 미루어 보아, 위 『한성순보』의 발간인은 분쟁의 해결 및 전쟁 억지수단으로서 국제법에 호소하는 것이 설득력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성순보』 발간인들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서 위 신문 1984년 9월 19일자(34호)의 “공법에 대한 논설”과 “국가간의 전쟁과 국외외교(局外外交)의 조례를 논함”에서 만국공법이 소개되었다. 특히 이날 자 “국가간의 전쟁과 국외외교의 조례를 논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서적의 내용 중 전시 중립 부분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1880년대 중반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는 다음과 같이 만국공법이 소개되고 있다. 유길준은 당시 양절체제(兩截體制)론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만국공법이 강대국으로부터 약소국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즉 “세계 여러 나라가 수공국(受貢國)과 증공국(贈貢國)의 양절체제(兩截體制)를 똑같은 것으로 봄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는 형세의 강약은 돌보지 않고, 권리의 유무를 단지 따지게 되는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의 망령된 자존은 공법의 비방을 스스로 부르는 것이 되며, 약소국이 받는 수모는 공법의 보호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한결같지 않은 편파적 현상은 공법의 불이행을 보충하려는 약자의 자존하는 도가 되며, 강자가 자행하는 교만한 버릇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은 공법에는 한 줄도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兪吉濬全書 1 - 西遊見聞(全)』 117). 그리고 유길준의 『국권(國權)』(1888-9년 추정)에서는 한 나

라의 주권이 “형세의 강약, 토지의 대소, 인민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동등하다”고 하여 국제사회에서 주권평등의 원리를 거론하였다. 이는 “절대적인 이치”로서 “공법에 의해 규제되고 보장받는다”고 강조되었다.<sup>6)</sup>

그리고 개화기 전통적 국가관계를 근대적 관계에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통상, 관세, 조약, 사절제도 및 전권위임 등을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국공법이 국가간 실무에 활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1880년 후반에는 조선에서 대외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실무지침서로서 ‘만국공법’이 참조되고 원용되었다.<sup>7)</sup>

이점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편찬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1887년, 1책 8장)의 관련 규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신설된 외교부서의 업무규정에는 외국과의 조약문과 통상장정 및 외국인과의 교섭사례를 간행하고, 조약과 장정의 개정시 ‘萬國公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며, 공사·영사의 위임장 발부 등이 주된 임무로서 중시되었다. 갑오개혁당시 조선 정부의 외교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이 좀더 근대 외교를 수행하는 형태로 그 직제가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에 따르면, 외무아문(外務衙門)에서 교섭·통상 사무와 공사(公使), 영사(領事) 등 관리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중 참의(參議) 1명, 주사(主事) 4명으로 구성되는 ‘교섭국(交涉局)’에서 외교 사무를 맡아보며 여러 나라들의 공법(만국공법)과 사법을 겸하여 심사하게 되었다(『고종실록』 고종 31년 6월 28일조). 이와 같이 당시 조선의 외교담당 부서에서는 서구의 근대적 국제법, 국제관계 및 대외실무에 관한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만국공법’을 참조하였다.

## 2. 약육강식의 국제질서관과 만국공법 불신론

1878년 음력 12월 15일 청의 이홍장(李鴻章)이 조선의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선이 취할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영국,

6) 유길준의 ‘양질체제’론과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정용화 2004, 153-234를 참조하기 바람.

7) 김수암 2002, 4-5. 개화기 조선에서 서구의 근대적 외교제도의 도입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김수암(2000)을 참조하기 바람.

독일, 프랑스, 미국 등과 통상을 하며,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 편지에서 이홍장은 만국공법을 세력균형과 연관시키면서, 국제법과 조약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고종실록』 고종 16년 7월 9일 조).

이홍장의 이러한 권고에 대하여 이유원은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의 견해는 강화도조약 체결이후 3년간의 조일관계에서 청국이 우려할 만큼 일본의 침략이 절박하다고 인식될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현시점에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유원은 당시 서양의 국제법(만국공법)이 약소국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만국공법에 호소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서양의 만국공법으로도 일본의 오키나와 병합을 막지 못하여 일본의 횡포를 제지할 수가 없었다. 당시의 터키, 오키나와, 벨기에, 덴마크 등의 소국들보다도 더 가난하고 약소국가인 조선의 처지를 고려할 때, 만국공법에 의지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고종실록』 고종 16년 음력 7월 9일조). 이러한 편지내용은 비록 이유원의 개인적 견해를 취하였지만, 1870년대 말 조선의 집권층이 만국공법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1885년 영국의 거문도 점령사건 당시 조선 정부는 만국공법을 활용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하였다. 1885년 4월 7일(음) 독변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金允植)은 칼스 주한 영국 총영사대리와 오코너 주청임시대리공사에게 공문을 보내, 거문도 점유논의는 양국의 우의와 '만국공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들어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주재 각국 외교관들은 영국의 행동을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본국정부로부터 훈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영 양국이 원만히 타결하기를 바란다고 회답할 뿐이었다(『고종시대사』 4, 고종 22년 4월 7일조; 『고종실록』 고종 22년 3월 29일, 4월 7·8·10일조).

조선 정부가 기대를 걸었던 만국공법은 영국의 거문도 불법점령이라는 외국에 의한 주권침탈에 아무런 억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박영효 등 일부 개화파는 18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만국공법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박영효는 「1888년 상소문」에서는 서구 근대 국제질서의

양상을 과거 중국의 전국(戰國)시대의 혼란상에 비유하였으며, 국제질서의 기본 성격을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자국의 식민지로 삼는 약육강식의 상황으로 파악하였다. 「1888년 상소문」에서는 당시 국제사회에 국제법에 해당되는 ‘萬國公法’이 존재하며, 그것에 근거하여 각국이 자국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국제관계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만국공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나라가 자립과 자존의 힘이 없으면 만국공법은 사실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영효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비록 만국공법(萬國公法)과 균세공의(均勢公義)가 있긴 하지만 한 나라에 자립과 자존의 힘이 없으면, 반드시 영토의 삭탈과 분할을 초래하게 되어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만국공법과 공의는 본래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서구의 개명하고 강대한 나라도 역시 패망을 맛보았는데, 하물며 아시아의 개명하지 못한 약소국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구라파인들은 입으로는 법과 도리를 일컫지만 마음속으로는 야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일본외교문서』 21권, 296).

개화파의 이러한 만국공법관은 ‘만국공법’이 사실상 구미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약소국인 조선 등 비서구 국가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박영효의 이러한 만국공법 회의론은 개화기의 일부 지식인들이 처음에는 만국공법을 비판하다가 나중에 만국공법을 원용하거나 이에 호소하는 점과 크게 대조되며 시기적으로도 앞선다.

「1888년 상소문」에서 표명된 바 있는, 만국공법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은 1880년대 『한성순보(漢城旬報)』와 『한성주보(漢城周報)』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서술되어진다. 거문도점령사건 이전 『한성순보』의 “洋務首在得人論”(제10호, 1884/1/30)에 의하면, “오늘날 유럽의 형세는 마치 전국시대와 같고, 이른바 만국공법이란 거의 전국시대 종약(從約)과 같아서 유리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배신하며 겉으로는 비록 따르는 체하지만 속으로는 실상 위배된다. 각국의 외무대신은 진정 공법을 믿고서 안전을 꾀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몇 년 후 거문도 점령사건을 겪으면서, 『한성주보』의 “論天下時局”(제6호, 1886/3/8)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국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만국공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재 동서양 각국이 서로 강화(講和)하여



조약을 맺어 통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공법에 의거하여 논의를 결정 및 비준하고 있다. 아, 그러나 저들 각국은 일단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을 것을 보기만 하면 공법을 저버리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약을 파기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물론, 끝내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억제하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무시하는 형세를 이루게 되어 다시는 강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이러한 만국공법에 대한 회의는 『한성주보』의 “論西日條約改證案”(제17호, 1886/5/24)에서 “그러므로 조약과 공법이란 다만 부강한 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남을 꾸짖는 도구일 뿐이며, 또 부강한 자들이 조약과 공법을 빌어 저희들에게만 편리하게 하는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1887년 주미공사에 임명된 병조정랑(兵曹正郎) 김사철(金思轍)은 임명사직 상소문에서 ‘만국공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솔직히 토로하고 있다. 그는 외국어에 능통치 못하고 국가간 외교실무에 밝지 않은 자신 등이 외국에 파견된다면 오히려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고종시대사』 5 고종 25년 8월 21일조).

이러한 만국공법의 기능에 대한 부정적 견해 내지 이해의 부족은 이후에도 계속 표명되었다. 20세기초에 들어서 조선의 주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만국공법의 존재는 조선의 자주독립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시기 박은식 등 애국계몽운동가들은 국제공법을 외쳐왔던 서구국가들이 방관만 하는 상황을 직시하여 국제공법에 의존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박은식(朴殷植)은 서구 열강이 조선을 원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며 커다란 불행을 자초할 것이라고 보았다. 설사 열강들의 조선 원조 성명이 있더라도 이를 사양해야 하며, 조선의 독립은 조선의 自力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大韓自強會月報』 제4호, 1906, “自強能否의 問答”). 안중근도 『東洋平和論(1910)』에서 만국공법이나 엄정중립 등의 용어는 사실상 당시 외교관의 교활하고 왜곡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안중근 의사 자서전』, 128-129).

### 3. 자강·자주독립의 모색과 만국공법 준수·활용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만국공법이 무용함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청·일 등 외세의 내정간섭을 비판하며 조선의 자주독립

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만국공법을 원용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즉 서구 열강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이 단순히 금수와 같이 무력행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면서, 서구의 만국공법을 원용하여 서구에 대응하려는 구상이 대두하게 되었다. 개화기 한국의 현실에서 외국의 부당한 영토 침탈 내지 간섭을 방지하며, 이에 항의하는 지렛대로서 만국공법을 활용하여 외세를 제압하거나 견제한다는 발상이 당시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려되어졌다.

특히 조선의 개화파들은 조선의 생존과 평화를 위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즉 '자강(自強)'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약소국 한국으로서는 부국강병을 추구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서구 근대국제질서의 기본원리인 '세력균형(均勢)'과 만국공법을 활용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독립을 확보하려고 구상하였다.

만국공법을 '균제'와 관련지어 이해한 사례로서, 1876년 5월 제1차 수신사(修信使)로서 일본을 방문하였던 김기수(金綺秀)는 『일동기유(日東記游)』에서 만국공법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修信使記錄』, 『日東記游』, 卷三, 政法, 70). 위 기록에서 김기수가 '만국공법'을 언급한 것은 그가 일본 체류중에 만국공법에 관하여 일본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나, 또는 『만국공법』에 장쓰구이(張斯桂)가 쓴 서문을 읽었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어 지고 있다. 장쓰구이는 『만국공법』의 서문에서 당시 세계의 강국을 춘추전국시대의 열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미국은 '진(秦)'으로, 러시아는 '초(楚)'로, 영국과 프랑스를 '제(齊)'로,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를 '노(魯)'와 '위(衛)'로, 그리고 터키와 이탈리아를 '송(宋)'과 '정(鄭)'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서로 병존하는 것은 이들 간에 조약들이 계속 지켜져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김용구 1997, 186-197).

한편, 근대 조선에서 서구의 근대적 국제법, 국제관계 및 외교에 관한 실무 지식을 수용하여 자주독립 외교와 국내정치개혁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다음과 같이 표명되었다. 즉 국제법(만국공법)을 수용하여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자주독립의 외교를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정개혁이 우선되거나, 또는 내정과 외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김옥균은 1886년 「지운영사건규탄상

소문」(『東京日日新聞』, 1886/7/9)에서 주변 열강의 침략주의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청국도 심지어 일본도 의지할 바가 못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김옥균은 당시 조선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구미 각국과 신의를 가지고 친교를 맺고, 대내적으로는 어리석은 백성을 문명의 길로 가르치며, 상업을 일으켜 재정을 정리하고, 군사를 길러서 국력을 크게 키워나갈 것을 제시하였다(『金玉均全集』, 143-146).

그리고 『한성주보』는 “論外交”(제25호, 1886/7/24)라는 논설하에 교제의 도가 국가에게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위 논설에서는 서양 각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법과 조약만을 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진흥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성주보』의 “論外交擇其任”(제31호, 1886/10/4)에서는 ‘내수외양(內修外攘)’을 위해서 외교업무의 책임자를 뽑아 맡기며, 외교를 잘하려면 먼저 내치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약소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서구 열강이 만국공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똑같이 준수하지 않을 수는 없는 처지였다. 박영효 등 개화파는 비록 국제정치의 현실에서는 법과 신의가 지켜지지 않지만, 조선이 최대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킴으로써 열강의 개입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영효는 다음과 같이 국가간 신의를 언급하고 있다. “신의로써 외국과 교류하여 배신당하지 않으며, 또한 그들과 조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신중을 기함으로써 경솔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일본외교문서』 21권, 309). 즉 박영효는 서구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조선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국체를 보전하며, 문명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박영효는 만국공법이나 주변 열강의 도움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간 신의를 지키면서 조선의 국력을 길러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조선의 지식인들은 당시 국제정치 현실에 대해 강대국이 국가간 신의와 만국공법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약육강식적 권력정치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조선이 국가간 조약과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써 국가간 신의를 보여줄 것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고는 한편으로는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국가간 신의와 기본 의무를 지킬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열강의 불필요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신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갑오개혁 당시 자주독립외교의 일환으로서 외무아문이 신설되었으며, 국내외 문서에 개국기원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동안 청국의 방해 때문에 중지되었던 영·독·불·이·러 등 각국에 특명전권공사를 다시 파견할 것이 제외되었다. 그리고 1882년 이래 조선이 청국과 맺은 불평등조약이 파기되었으며, '보호청상규칙'이 제정·반포됨으로써 청국인이 그동안 조선에서 향유했던 모든 특권이 폐지되었다(『고종실록』, 고종 31년 6월 28일조; 유영익 1990).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근대적 외교직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탈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조선내에서는 군주를 비롯하여 정부대신과 민간차원에서 그동안의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종실록』, 고종 32년 5월 20일조).

이러한 배경하에 18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만국공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들이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그 예로서, 민비(명성황후)시해사건 이후 최익현(1896년 2월 25일), 이시후(李時宇, 1895년 8월 4일), 김익로(金益魯, 1895년 10월 19일) 등 일부 유학자들의 상소문에서는 일본을 응징해야 된다는 명분을 만국공법에서 찾았다(김용구 1997, 269-295).

그후 1890년대 후반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국내외에 보여주기 위해 만국공법을 원용하여 고종에게 황제에 등극할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칭제 여론에 대해 고종은 당시 '광무(光武)'라 건원(建元)을 하고도 황제의 존호를 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절하였다. 이에 1897년 9월 25일 농상공부협판 권재형(權在衡)은 상소문을 올려 『공법회통(公法會通)』 제84장에서 86장까지를 인용하면서 조선이 자주(自主)국가로서 칭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고종이 제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만국공법상 조금도 구애됨이 없으므로, 신속히 칭제할 것을 청하였다(『고종시대사』 7, 광무 원년 9월 25일).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이후 의병운동을 주도한 일부 유학자들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일본의 불법행위를 무효화시키고 세계 각국의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을사조약 체결을 전후한 시기에 전·현직 관리와 유생들은 상소를 올려서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는 한편, 국제법(만국공법)에 호소하는 양상을 띠었다(최창희 1999, 81-94). 이 과정에서 『만국공법』, 『공법회통』 및 『공법편람』 등

의 저술이 크게 원용되었다. 그리하여 강압에 의한 조약은 당연히 무효라는 점과 비준되지 않은 조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이론을 들어 을사보호 조약의 폐기를 상소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서 1910년 한일병합 당시 자결한 김녕한(金甌鎭, 1843-1910)의 경우, 1905년 11월 ‘토역소(討逆疏)’에서 만국공법에 비추어 을사조약을 무효화할 것을 진언하였다(『梧泉先生實記』 권1).

이 시기 이승만의 경우, 조선이 정부에 의뢰할 힘이 없으므로 공법도 소용없고 조약상의 규정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조선이 외교를 잘 함으로써 외국의 침탈을 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선이 먼저 공법의 뜻을 어기지 말고 공평정대하게 행세하며 각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정의가 돌아올 것이므로, 타국이 의리상 친구로 알아 언제든지 내가 남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에 힘껏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독립정신』 1904, 254-261).

결국 국권상실의 위기에 처하여 『皇城新聞』 1909년 8월 8일자 “韓國民族의 外交를 論함”에서는 한국이 쇠망한 원인으로서 내정의 부패와 교육의 부진뿐만 아니라 국민의 외교사상이 몽매하여 외국과 대치시 그들의 책략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단순한 사상으로 교제하다가 그 책략에 빠져 자국의 운명을 위태롭게 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반성하고 있다. 위 논설에서는 이후 한민족은 정치상 외교권은 타국에 빼앗겨 활동할 여지가 없으므로, 사회적 외교, 즉 민족적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20세기 초에 이르러 자국의 독립을 보전하려는 국민에게 외교사상이 선결문제이므로, 시세를 방관하지 말고 이를 이용할 자각심을 환기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 IV.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만국공법』은 새로운 국제관계를 인식하는 지식체계이자, 조선의 주권과 자주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세기 후반까지 소위 쇄국정책을 펼쳐온 조선으로서는 전통적인 사고, 제도 및 교육수단으로는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파악하거나 이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청·일을 통해 외부의 변화된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서적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구에서 발달된 근대 정치학의 주요 내용들에 접하게 되었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근대적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하고 체계적 교육방법과 수단이 거의 없는 당시 상황에서 개화파 등 일부 지식인들이 『만국공법』 서적의 수용을 통해 새로운 근대 국제질서 양상을 파악하고 소개하고자 한 일련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개화기 한국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에게 『만국공법』의 수용 문제는 국가적 생존과 개인적 삶의 커다란 부분이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만국공법은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 역량의 한계와 수용자의 개인적, 학문적, 정치적 성향에 의해 일련의 취사선택과정을 통해 이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국제질서상이 그려졌다.

이시기 『만국공법』의 전래와 이로 대변되는 근대국제질서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만국공법』 서적에 소개된 국제법 지식체계를 적극 도입하며, 만국공법이 국가간 전쟁을 예방하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전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한 경우이다. 둘째, 이와 반대로 만국공법은 명분상에 그치며, 실제로는 약육강식의 권력정치가 전개되는 양상에 실망하여, 만국공법과 이에 기반한 조약체결 등 근대국제질서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셋째, 만국공법과 근대국제질서에 대해 불신하면서도 조선이 만국공법을 활용하고 근대적 학문과 문물을 수용하여 부강한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전하고자 시도한 경우이다.

당시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의존·활용론 대 회의·무용론이 교차되는 가운데, 개화파와 일부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만국공법 등 새로운 국제법 규범과 외교절차를 숙지하고 만국공법을 원용하여 청의 간섭과 일본의 진출로부터 조선의 자주독립을 수호하려는 일련의 외교적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특히 조선에서 만국공법을 원용하거나 이에 호소하는 양상을 보면, 1890년대 중반 청일전쟁을 분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대청관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로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말로는 만국공법을 주창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해관계와 힘에 의해 행동하는 근대 국제질서의 속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에서 만국공법을 통해 서구 근대국제질서의 변화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이를 수단으로 대처하고 저항하기에는 커다란 한계점이 노정되었다. 또한 조선 정부차원에서 만국공법을 파악하여 근대적 외교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점점 커져갔음에도, 실제로 외교지식 및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처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 과정에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하에 국권상실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지식인 및 정치가들로서는 당시 서구의 정치학, 국제법 등을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이며 비판적 검토를 거쳐 수용하기보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적극 수용하거나 또는 이를 거부하는 극단적 선택에 처해야 했다.

이상 본문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조선내 인식과 ‘만국공법’의 활용구상을 살펴보았지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조선의 지식인 및 정치가들이 제한되었다. 이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연구과제로서 개화기 광범위한 정부문서와 문헌에서 만국공법 등 새로운 국제질서관과 외교정책구상, 그리고 이를 교육시키기 위한 구상과 제도들에 대한 좀더 자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20세기초 조선내에서 서구 근대학문을 수용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일련의 학교들이 설립되고 관련 교과서들이 간행되었다. 이에 미루어 보아 이 시기에 이르러 만국공법에 대한 좀더 다양한 평가와 근대식 학교교육을 통한 설명이 시도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이시기에 간행된 상당수의 정치학 관련 서적과 계몽잡지에 실린 논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국제)정치학의 형성’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개화기로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풀어야 할 학문적 과제중의 하나로서 한국의 근대국가형성과 국제사회에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생존의 모색이라는 측면을 든다면, 21세기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의 근대 (국제)정치학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대한 자기비판적 성찰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의 국제정치학의 기원과 뿌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19세기 개화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만국공법을 비롯하여 이후 서구의 근대적 학문체계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연속성과 단절의 측면을 밝히는 작업이 향후 좀더 구체적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高宗實錄』, 『高宗時代史』.
- 國史編纂委員會 編. 1971. 『修信使記錄 全』. 서울: 탐구당.
- 朴泳孝. 1888. “朝鮮國內政ニ關スル朴泳孝建白書.” 日本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  
21卷. 문서번호 106.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9. 『金玉均全集』. 서울: 아세아문화사.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1. 『陰晴史·從政年表 全』. 서울: 탐구당.
-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1971. 『兪吉濬全書』. 서울: 일조각.
- 이승만. 1904. 『독립정신』. 서울: 정동출판사.
- 안중근 저·편집부 역. 2000. 『안중근 의사 자서전』. 서울: 범우사.
- 鄭觀應. 1880. 『易言』. 觀辰書籤, 36편본.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81. 『萬國公法』. 서울: 아세아문화사.
- 博文局. 『漢城旬報·漢城週報』. 원문과 번역문 3권. 서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3.
- 『皇城新聞』
- 權善弘. 2004. “조선왕조의 대중국관계: 사대문제의 재조명.”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년 연례학술회의. 서울. 12월.
- 김봉진. 1995. “東アジア三國の‘開國’と萬國公法の受容.” 『日本 北九州大學外國語學部  
紀要』 84.
- 김세민. 2000. “19세기말 개화파의 만국공법 인식.” 『강원사학』 15집 1호.  
\_\_\_\_\_. 2002. 『한국근대사와 만국공법』. 서울: 경인문화사.
- 김수암. 2000. “한국의 근대외교제도 연구 — 외교관서와 상주사절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2. “1880년대 만국공법의 전파와 수용 — 조청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국제  
정치학회 2002년도 연례학술회의. 서울. 12월.
- 김용구. 1993. “서양국제법이론의 조선전래에 관한 소고 (1).” 『태동고전연구』 제10집.  
\_\_\_\_\_. 1997. 『세계관충들의 국제정치학 — 동양 禮와 서양 公法』. 서울: 나남출판.  
\_\_\_\_\_. 1999. “조선에 있어서 만국공법의 수용과 적용.” 『국제문제연구』 23호.
- 김현철. 2004. “개화기 국제질서의 변동과 만국공법(국제법)의 수용.” 한국국제정치학  
회 2004년 연례학술회의. 서울. 12월.



- 김홍수. 2002. “개항 전 『만국공법』의 수용과 이해.” 공군사관학교 『논문집』 49집.
- 오영섭. 2004. “개항 후 만국공법 인식의 추이.”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서구문화의 수용과 근대개혁』. 서울: 대학사.
- 유영익. 1990. 『갑오경장연구』. 서울: 일조각.
- 유재곤. 1995. “일제의 대한침략논리와 만국공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이광린. 1969. “『이언』과 한국의 개화사상.” 이광린, 『한국개화사연구』. 서울: 일조각.
- \_\_\_\_\_. 1982. “한국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受容과 그 影響.” 『東亞研究』 제1집.
- 이용희·신일철, 1977. “事大主義(上·下) — 그 現代的 解釋을 중심으로 —.” 李用熙, 『韓國民族主義』. 서울: 서문당.
- 정용화. 2004.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최종고. 2001. 『全訂新版 韓國法思想史』. 서울: 서울대출판부.
- 최진식. 1990. “한국근대의 온건개화파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최창희. 1999. “유생의 상소투쟁.”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43: 국권회복운동』. 서울: 탐구당 문화사.
- Elias, Nobert 저 · 윤희수 역. 1995. 『문명화의 과정: 매너의 역사』. 서울: 신서원.
- Gong, Gerrit W. 1984.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 서울대 규장각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

##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and the Perception of the Modern International Order in the Modern Korean Intellectuals

Hyun-Chul Kim |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Korean Intellectuals such as the Progressive Party leaders adopted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via the translated book,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萬國公法』), which reflects the west-oriented values and the European standards, and how they perceived the mainstreams of the modern international order. At the transforming period of the Northeast Asian order, the Progressive intellectuals in Korea showed their determination and efforts in order to import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e cris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r. In the 19th century Chosen, the diverse and complicated aspects of the Korean perception and policy thinking were divided as follows. For instance, some Koreans hoped that international law would prevent wars among states and secure Korea's independence. Others believed that the norms of international law were idealistic and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order was the struggle for power among nations. Therefore, they refused to adopt international law and modern diplomatic practices. There were also Progressive Party leaders who tried to guard Korean independence against foreign interventions and aggressions by utilizing international law.